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741
------	------

2020. 09. 07.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0.09.0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조인동)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연구원을 설립하고,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출연 사무명: 서울연구원 출연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4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 2) 추진 필요성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시책연구기관으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행정, 복지, 교통, 도시재생, 도시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시정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다. 출연 사무내용

- 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4)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6)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

## 라. 출연 기관 개요

### 1) 연 혁

- 1992. 1.15 :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공포
- 1992. 10.1 : 시정개발연구원 개원(강남구 논현동)
- 2003. 1.27 : 현 청사(서초구 서초동) 이전
- 2012. 7.26 : 서울연구원으로 명칭변경
- 2014. 10.20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로 제명 및 일부개정

### 2)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3) 위치도



### 4) 규 모

- 조직 : 원장, 부원장, 감사실, 성평등인권센터, 1본부, 8실, 2센터
  - ▶ 연구기획조정본부, 도시사회연구실, 시민경제연구실, 도시경영연구실, 교통시스템연구실, 안전환경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도시정보실, 경영관리실, 도시외교연구센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인력 : 정원 228명 / 현원 215명

(2020. 7월 현재, 단위:명)

구분	계	원장	연구직	일반직	전문직	공무직
정원	228	1	151	35	25	16
현원	215	1	140	34	24	16
과부족	△13		△11	△1	△1	

### 5) 지원시설

- 규모 : 지상5층, 지하1층 / 연면적 8,467.83m<sup>2</sup>
- 건축년도 : 2003년
- 시설현황

층별	주요 용도
지하1층	정보자료실, 공동연구실, 체력단련실, 기계전기실,
1층	도시사회연구실, 시민경제연구실, 성평등인권센터, 전산실, 방재실, 도시정보실, 공동연구실
2층	원장실, 부원장실, 연구기획조정본부, 경영관리실, 도시외교센터, 도시경영연구실, 대. 중회의실
3층	도시공간연구실, 교통시스템연구실
4층	안전환경연구실
5층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2021년 출연금 편성액(안) : 34,524백만원 ※ 2020. 7월말 현재

2) 2021년 산출근거(안)

(단위: 백만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계		45,584		계		45,584	
1. 일반사업계정		37,584	82.4%	1. 일반사업계정		37,584	82.4%
가. 서울시 출연금		34,524	75.7%	가. 연구사업비		7,851	17.2%
나. 자체수입		3,060	8.1%	연구과제		7,172	15.7%
				연구사업운영		679	1.5%
수탁사업비		1,280	2.8%	나. 경영사업비		8,244	18.1%
출판물판매수입		30	0.1%	다. 인건비		21,311	46.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250	0.5%	라. 예비비		178	0.4%
이월금		1,500	3.3%				
2. 수탁사업계정		8,000	17.6%	2. 수탁사업계정		8,000	17.6%
가. 수탁금		8,000	17.6%	가. 수탁연구비		6,720	14.7%
				나. 계정전출금		1,280	2.8%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동의안의 개요

- 2021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서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서울연구원 현황

-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서울의 복잡 다양한 도시문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주요 시정과제에 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현재 1본부 8실 2센터<sup>1)</sup>에 연구직 142명을 포함해 216명의 정규 인력을 갖추고 있음(2020년 8월 기준).

#### <서울연구원 인력 현황>

(2020. 8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연구직	일반직	전문직	공무직
정원	228	1	151	35	25	16
현원	216	1	142	34	24	15
과부족	△12		△9	△1	△1	△1

1) 서울연구원의 조직은 원장, 부원장, 감사실, 1본부(연구기획조정본부), 8실(도시사회, 시민경제, 도시경영, 교통시스템, 안전환경, 도시공간, 도시정보, 경영관리), 2센터(도시외교연구, 서울공공투자관리)로 구성됨.

- 2020년 연구원 예산은 출연금과 자체수입 등 463억 8천1백만원이며, 7월 현재 203건의 연구를 수행해 박사 1명당 평균 3.1건의 연구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연구원의 연구실적은 총 1,250건으로, 자체 연구 833건, 수탁연구 298건, 협력연구 119건임.

### <서울연구원 연도별 연구 수행 현황>

(2020. 7월 기준, 단위 : 건)

구분	계	자체연구					협력연구	수탁연구
		소계	정책	기초	현안	수시		
총계	1,250	833	260	140	147	286	119	298
'20년(7월)	203	125	29	24	20	52	19	59
'19년	290	186	55	31	36	64	32	72
'18년	261	179	66	29	36	48	21	61
'17년	233	173	53	25	31	64	13	47
'16년	263	170	57	31	24	58	34	59

- 정책연구 : 정책개발 및 사회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 기초연구 :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 현안연구 :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현안대응형 연구 - 수시연구 : 신속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 협력연구 : 외부의 학계,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
- 수탁연구 : 외부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 다. 연구원 출연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sup>2)</sup>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sup>3)</sup>에 근거를 두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2)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3)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 연구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정책현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시정관련 중·장기계획과 핵심연구 기획·발굴을 비롯한 각종 연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교류와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서울시 수탁과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연구역량지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운영계획 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구원의 체질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5년간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209억원에서 2020년 336억원으로 60.7% 대폭 증가했음(연평균 증가율 15.2%).

#### <서울연구원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안)
20,900	21,900	23,600	29.800	33.600	34,500

- 2021년도 연구원의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7%(7억 9천 7백만원) 감소한 455억 8천 4백만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 출연금은 전년대비 8억 8천 3백만원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세입계정 중 일반사업계정 수입은 서울시 출연금, 자체수입을 합쳐 375억 8천 3백만원이며, 수탁사업계정 수입은 80억원임.

### <서울연구원 2021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입 예산			
예산과목	2021년	2020년	증 △ 감
계	45,583	46,380	△797
1. 일반사업계정	37,583	38,580	△997
가. 출연금	34,523	33,640	883
나. 자체수입	3,060	4,940	△1,880
1) 수탁사업 계정전입금	1,280	1,950	△670
2) 출판물 등 판매수입	30	30	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금	250	250	0
4) 이월금	1,500	2,710	△1,210
2. 수탁사업계정	8,000	7,800	200
가, 수탁연구비	6,720	5,850	870
나. 계정전입금	1,280	1,950	△670

- 세출계정은 ▶청사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가 10억 1천 5백만원, ▶총액인건비 인상률(4.28%)과 기관성과급 반영(190%)에 따라 인건비가 11억 9천 8백만원 증액되었고, ▶자치구 구정연구단 파견 연구원(50명)에 대한 보수와 기관 성과급 28억 2천 8백만원, ▶예비비 8억 8천 3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음.

### <서울연구원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안)	증감액	비 고
계	46,381	45,584	△797	
1. 일반사업계정	38,581	37,584	△997	
연구사업비	10,178	7,850	△2,328	
연구과제	9,990	7,171	△2,819	· 자체 연구과제 190개(전년대비 5개 증가) · 정기 수탁과제 자체연구화 사업 순증 · 선진형 자치연구 지원(구정연구단 연구 지원) 관련 인건비(28억 2천 8백만원) 순감 · 서울 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 11억원 삭감
연구사업 운영	188	679	491	· 7연구실 및 2센터 운영비 (부서운영비, 과제개발회의비 등)

구분	2020년	2021년(안)	증감액	비고
				· 전략연구실 운영비 중 행사홍보비(국제 세미나 3억원, 시정성과 조사 2억원)순증
경영사업비	7,229	8,244	1,015	
기  획	122	115	△7	· 회의운영비 등(솔루션박람회·포럼 삭감) · 성평등 및 인권 관련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비 등 반영
대외협력	1,305	407	△898	· 국내외 언론보도 및 기획 등 (행사홍보비 및 국외여비 등 감액)
인사복지	1,771	1,647	△124	· 연구지원인력 감축('20년 10명→'21년 8명) · 기관성과급(190%) 반영
경영관리	614	1,816	1,202	· 회의운영비 등(내규개선 및 정보공개 심의 관련) 증액 · 청사운영 관련(자산취득비, 임차료 등) 증액
도시정보	2,506	3,328	822	· 빅데이터 확보 및 콘텐츠 구축 반영 · 연구개발비(과제관리·경영정보시스템, 문서중앙화) 등 증액
경상경비	911	931	20	· 기관운영경비(여비 등 감액)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인  건  비	20,113	21,311	1,198	· 정규직 228명(전년 동일) · 총인건비 인상을 4.28%, 기관성과급 190%
예  비  비	1,061	178	△883	· 일반예비비 1억 7천 6백만원 증액 · 인력총원 봉급예비비(미세먼지연구) 4천 8백만원 순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억 4천 8백만원 순감 · 내부보유금 6억 6천 3백 만원 순감
2.수탁사업계정	7,800	8,000	200	
수탁연구비	5,850	6,720	870	· 수탁연구비 증액
계정전출금	1,950	1,280	△670	· 계정전출금 하향 조정 (결손 발생액 반영)

○ 이중 ‘서울 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 는 2019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8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서울 평화 국제포럼” 의 계속 사업으로, 올해 15억원에서 내년에는 4억원으로 감액되었음.

- 당초 이 연구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보편평화의 상을 논의하는 행사성 성격의 국제 포럼(2020.10.15.~16 예정)을 개최하는 사업이었음.

- 그러나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되었음.
- 대신에 국내·외 연구기관간에 평화 의제를 논의하는 ‘서울평화 대화’ (2020.11.7 예정)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소요사업비를 3억 9천만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서울평화 포럼’ 예산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연구원간의 자족 행사로 전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부족분(4억원)을 보충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 구정연구단 연구지원 예산은 올해 29억 3천 2백만원에서 28억 2천 8백만원 감액(96.5%)된 1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구정연구단은 자치구 정책역량 강화와 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5월에 발족된 조직으로, 현재 센터장 1명, 전임연구진 4명 등 총 5명과 자치구 구정연구단 파견연구진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정연구단 연구진 구성〉

(2020. 7월 기준, 단위 : 명)

계	센터장	연구직		파견직원*
		전임 연구진	겸임 연구진	
64	1	4(박사1, 석사3)	9(박사 9)	50명 (현원 46명)

\* 자치구 파견(정원의 직원): 초빙연구위원 25명, 위촉연구원 25명 파견 완료 시 기준

- 그러나 구정연구단 파견 연구원의 신분과 처우개선 문제가 제기되고, 구정연구단의 인력지원 방식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의 위반 여지 등 법률적 문제<sup>4)</sup>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였음.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연구원을 자치구 구정연구단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 아닌 사외파견(전출)으로 해석(2020.8.14)함으로써 법률적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음. (참고자료Ⅱ)
-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구정연구단 운영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구정연구단의 인건비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할 것임.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4) 구정연구단 인력에 대한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허가 필요, 2년 초과 시 직접 고용의무, 고용차별 금지 여부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참고자료 I]

#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

### 추진방향

- 서울평화포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최·운영 전략 마련
- 국내 최초 ‘국제 평화연구기관 협의체’ (가칭) 발족으로 서울연구원의 국제 평화네트워크 구축
- 국제 평화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울시 도시평화 의제 발굴

### 추진내용

- 서울평화포럼 의제 발굴과 장기 운영방안 연구
  - (연구목적) 서울평화포럼의 지속가능성 모색과 서울 주도의 평화 비전 수립
  - (연구방식) 기개최 ‘2020 서울평화포럼’의 성과 정리 및 외부 평가의뢰, 평화 관련 국제포럼 및 ‘평화도시’ 사례 조사, 핵심의제 발굴 연구 추진을 통해 서울평화포럼의 중·장기 플랜 마련과 운영방안 제시
  - (연구결과) 2021 서울평화포럼 개최 지원, <서울평화포럼> 백서 발간
- ‘국제 평화연구기관 협의체’ (가칭) 구상 연구
  - (연구목적) 서울연구원이 주관하여, 서울평화포럼 내 ‘서울피스 컨소시엄’에 참여한 국제평화연구기관과 함께 다양한 국제 평화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선도하기 위한 연구협의체를 구성
  - (연구방식) 공동연구 주제 발굴·선정, 13개 참여기관 네트워크 기반 마련, 정기 온라인회의 추진
  - (연구결과) ‘국제 평화연구기관 협의체’ 발족, 연차보고서 발간

### 추진예산 : 4억원

### 예상결과

- 서울평화포럼의 정례개최 전략을 통해 세계 평화도시로서 서울시 위상 제고
- 연구협의체 발족을 통해 미래 평화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위상 강화
  - 국제평화연구협력체의 주관기관으로서 국제적 평화 의제를 선점
  - 향후 국내 연구기관·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연구협력 플랫폼을 확대 구축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 소요예산

(단위: 원)

항목		산출 내역				계	
<b>총계</b>						<b>400,000,000</b>	
<b>인건비</b>	<b>초빙부연구위원 및 위촉연구원 인건비</b>					<b>222,000,000</b>	
	초빙부연구위원 기본연봉급(3급)	4,000,000	3	명	12	월	144,000,000
	초빙부연구위원 기타 복리후생비 등(성과급 포함)	1,000,000	3	명	12	월	36,000,000
	위촉연구원 기본연봉급 (4급)	3,000,000	1	명	12	월	36,000,000
	위촉연구원 기타 복리후생비 등(성과급 포함)	500,000	1	명	12	월	6,000,000
<b>조사비</b>	<b>조사 정리원 활용</b>	10,000,000	1	식			<b>10,000,000</b>
<b>원고비</b>	<b>외부 집필진 원고료</b>	1,000,000	13	명			<b>13,000,000</b>
<b>유인물비</b>	<b>‘국제 평화연구기관 협의체’ 단행본 출간비 포함</b>	5,000,000	1	식			<b>5,000,000</b>
<b>여비</b>	<b>국내출장 등</b>	2,200,000	1	식			<b>2,200,000</b>
<b>회의비</b>	<b>자문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b>	20,000,000	1	식			<b>20,000,000</b>
<b>토론회비</b>	<b>1·2차 기획세미나</b>						<b>25,400,000</b>
	사회비	300,000	3	명			900,000
	발표비	400,000	15	명			6,000,000
	토론회비	200,000	15	명			3,000,000
	경비(다과, 식사)	40,000	50	명			2,000,000
	현수막 제작 및 자료집 인쇄제본	50,000	150	부			7,500,000
	회의실 대관료(상공회의소, 프레스센터 등)	3,000,000	2	회			6,000,000
<b>워크숍비</b>	<b>‘국제 평화연구기관 협의체’ 행사(해외기관 참여) / 온라인 워크숍</b>						<b>100,000,000</b>
	시스템 등 행사장 조성비	35,000,000	1	식			35,000,000
	스튜디오 대관료	20,000,000	1	식			20,000,000
	사회비	3,000,000	1	식			3,000,000
	통번역	10,000,000	1	식			10,000,000
	홍보	10,000,000	1	식			10,000,000
	기록(영상, 녹취, 사진)	4,000,000	1	식			4,000,000
	인쇄제작(기념품, 국내외 발송비 포함)	7,000,000	1	식			7,000,000
	기타경비(현장인력, 사진기사, 보험 등)	6,000,000	1	식			6,000,000
	예비비	5,000,000	1	식			5,000,000
<b>운영비</b>	<b>과제 운영비</b>	2,400,000	1	식			<b>2,400,000</b>

## [참고자료Ⅱ] 파견법 관련 고용노동부 의견조회 결과

"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수신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울연구원 관련)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은 자치구 구정연구단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을 위해 한시조직인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운영(19.2.1~21.12.31) 하고 있으며, 서울연구원, 자치구, 서울시는 '자치구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서울연구원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초빙연구원 및 위촉연구원들을 25개 자치구 구정연구단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음
- 파견연구원은 서울연구원의 정원 외 직원 신분으로 1년단위 임용계약(최대 3년까지 연장)을 체결하여 임용기간, 보수, 직원평가 등 사항은 서울연구원이 마련한 구정연구단 파견 직원 인사지침을 따르고 있음

- **(질의1)** 서울연구원의 구정연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이 각 자치구에 연구원을 파견하는 경우 파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지방공무원법에 우선 적용되는지
- **(질의2)** 파견법이 적용되는 경우 서울연구원이 파견법 제7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3)**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의 사용사업주 직접고용 의무와 관련하여 파견연구원의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 <<답 변>>

- 귀 질의 취지는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함) 소속 근로자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구정연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이라 함)의 근로자파견인지 아니면 사외파견(전출)인지가 주요 내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 연구원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회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파견법? 제2조제1, 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한편,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귀 연구원의 경우, 서울연구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자치구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내 25개의 자치구 구정연구단에 귀 연구원이 채용한 초빙연구원 및 위촉연구원들을 파견하여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등을 하며 귀 연구원에서 구정연구지원센터를 통해 인건비를 부담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연구원들을 자치구 구정연구단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 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다른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파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 장관



주부관

김교현

행정사부관

김민규

장

고용차별개선과장 08/14

강검윤

협조자

시행 고용차별개선과-1774 ( 2020.08.14. ) 접수 자치행정과-17391 ( 2020.8.14. )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 어진동 581 고용 / www.moel.go.kr

노동부) 6층

전화 044-202-7576 /전송 044-202-8074 / kinkyocho@korea.kr

/비공개(6)